

초등학교 학구위반 금지 안내문

취학의무

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16조에 따라
정해진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
(주민등록상 주소지=실거주지)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.

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8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

※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.

거주지 이전

거주지 이전 시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에 따라
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,

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
전입한 읍·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
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장전입 금지

위장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하여
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

「주민등록법」 제37조에 따라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